

# 2020년도 인천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 결과

##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20.5.18부터 5.22.까지 (5일간) 인천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2017년 6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12건(본 처분 7건, 현지처분 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주의 조치 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에 발굴한 수범사례 2건에 대하여는 산하 전 기관에 전파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 □ 감사결과 내역

구분	처분현황(건)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계	본 처분	현지 처분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계	추징·환수 등	환급·감액 등
계	12	7	5	7	1	4	2	-	-	-

# 2020년도 인천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 결과

【 수 범 사 례 】

## 수범사례 1 귀농·귀촌교육 추진

### □ 추진목적

-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체계적인 영농기술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귀농·귀촌의 정착률 제고
- 체계적인 품목별 심화영농기술교육을 통한 농업창업에 대한 준비로 재이농 방지 및 영농정착률 제고

### □ 추진실적

- 귀농·귀촌 종합교육 현황

구분	8기(2017)	9기(2018)	10기(2019)
교육(명)	122	91	88
수료(명)	96	74	81
횟수/시간	30회 / 120시간	18회 / 68시간	14회 / 68시간
교육만족도	80.8%	85.8%	91%
교육내용	- 기초영농기술 및 귀농정책, 성공사례, 현장실습 등 - 귀농 우수농가 현장 견학 등		

- 귀농·귀촌 단기교육 현황

- 2018년 귀농·귀촌대학 심화반 및 보수교육 : 12회 404명
- 2019년 귀농 품목별 교육(버섯,양봉,과채류) : 3개반 6회 212명
- 당진시 연계 귀농투어교육(우수농가 현장견학 등) : 1회 14명

### □ 수범내용

- 영농 정착 수준 및 단계별 교육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에 도움
  - 영농정착 도움정도 : 2017(84.9%) 2018(88.9%), 2019년(93.5%)
- 현장 학습을 겸한 영농교육 실시 및 전문지도사 연결 공금증 해소
- 품목별 및 보수심화교육으로 성공적인 농업창업 유도
- 영농 신규자에 대한 농촌현장 밀착 지원으로 친환경 선진 농업기술 습득

# □ 관련사진



농장실습



이론교육



귀농 품목별 교육



우수농가 현장견학교육



현장 실습교육



농기계 실습교육

# □ 보도자료

**동양뉴스통신**  
 [인천-동양뉴스통신] 경음식 기자는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4월 4일~11일 28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농기술센터 및 현지포장에서 귀농귀촌자에게 귀농귀촌에 대한 사전 준비로 성공적인 농촌 및 영농정착을 제고하기 위해 제8기 귀농·귀촌대학을 운영한다.

15일 농기술센터에 따르면, 귀농·귀촌대학은 기초 영농기술교육, 농지제도, 귀농·귀촌 마인드 정립 등의 내용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간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한다.

교육생 모집인원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시민 90명으로 자체기준에 의한 신청서류 전형으로 선발하며 신청접수는 다음달 6~10일까지 농기술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기술센터홈페이지(http://agrainchuan.go.kr)를 참고하거나 인혁개발팀(032-440-6910~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농 정착 수준 및 단계별 교육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에 도움을 주고, 현장학습을 겸한 영농교육 실시 및 전라도지도사와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귀농자의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식 | dynews1@naver.com  
 <저작권자 © 동양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뉴스투데이**  
**인천농업기술센터, 제10기 귀농·귀촌대학 교육생 모집**

이뉴스투데이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가 제10기 귀농·귀촌대학 교육생을 오는 3월 19일부터 모집한다.

귀농·귀촌대학은 귀농·귀촌자에게 영농기술교육과 농업현장 방문 체험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귀농·귀촌에 대한 사전준비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론과 현장견학을 통한 기초 영농기술교육, 농지제도, 귀농·귀촌 정책 및 사례 등의 수업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4월부터 7월까지 68시간을 교육하는 기초반 과정과 기초반 교육생 중에 희망자에 한하여 9월 부터 11월까지 40시간을 교육하는 심화반 과정으로 2개이다.

교육신청은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로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 1층(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로 109)에 방문하면 가능하며, 3월 19일 10시부터 신청은 온라인(www.innnews.com)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농기술센터 관계자는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조기 접수 마감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사전에 희망자 및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하며" 이번 교육은 이론교육과 현장견학 학습을 통해 영농정착에 교육생들의 영농기술을 익히게 하고 농업현황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영농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인혁개발팀으로 하면 된다.  
 신원철 기자 sy5568@daum.net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인천농업기술센터, 제10기 귀농·귀촌대학 교육생 모집**

인천 거주만 대상 3월 19일 10시부터 신청은 90명 선착순 모집

인천광역시 시 | 입력 · 2018-03-12 09:40 | 수정 · 2018-03-12 09:40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철)가 제10기 귀농·귀촌대학 교육생을 오는 19일부터 모집한다.

귀농·귀촌대학은 귀농·귀촌자에게 영농기술교육과 농업현장 방문 체험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귀농·귀촌에 대한 사전준비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론과 현장견학을 통한 기초 영농기술교육, 농지제도, 귀농·귀촌 정책 및 사례 등의 수업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4월부터 7월까지 68시간을 교육하는 기초반 과정과 기초반 교육생 중에 희망자에 한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40시간을 교육하는 심화반 과정으로 2개이다.

교육신청은 인천시 중구 중앙로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 1층(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로 109)에 방문하면 가능하며, 3월 19일 10시부터 신청은 온라인(www.innnews.com)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농기술센터 관계자는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조기 접수 마감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사전에 희망자 및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하며" 이번 교육은 이론교육과 현장견학 학습을 통해 영농정착에 교육생들의 영농기술을 익히게 하고 농업현황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영농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인혁개발팀으로 하면 된다.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로 109) 농업기술센터 1층(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로 109)에 방문하면 가능하며, 3월 19일 10시부터 신청은 온라인(www.innnews.com)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NEWSIS 수도권 > 인천**  
**인천농업기술센터, 제10기 귀농·귀촌 교육생 모집**

김민수 기자 | km0207@newsis.com  
 등록 2018-03-27 10:30:45

(사)는 · 2018년

**인천농업기술센터, 제10기 귀농·귀촌교육 교육생 모집**

INIBHD

인천농업기술센터  
**제10기 귀농·귀촌교육 교육생 모집**

00:06 00:37

1080p

## 수범사례 2

## 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 □ 추진배경

- 특화작목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조성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 및 로컬 푸드 확대로 농가소득증대
- 농업시설 현대화를 통한 최적 환경 관리로 농산업 경쟁력 제고

### □ 추진실적

-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 23개소 8ha
- 원예작물 현장애로 해결 신기술 보급 : 5개소 4ha
-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 : 3개소 8.5ha
- 농업 생산성 향상 시설환경 개선 : 13개소 2.3ha
- 농업 혁신성장 동력 제고 스마트농업 육성 : 2개소 3ha
- 인천 배 수출 생산단지 육성 : 1개소 15ha 18농가
- 코로나19 대응 일손부족 농가 일손 돕기 실시
  - 남동구 4농가(7.2ha), 배꽃 인공수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40여명 참여

### □ 수범내용

-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 패키지 신기술 보급
  - 추진내용 :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절감 패키지지시범(1개소 0.2ha)
  - 추진결과 : 난방에너지 34%절감, 생육증진 및 품질향상으로 소득 11% 증가
- 지역 활력화 신소득 작목 생산기반조성 : 11개소 2.2ha
  - 추진내용 : 신규 과수(샤인머스켓포도, 감귤), 우수 화훼품종 등 재배기술 보급
  - 추진결과 : 소비 트렌드 변화에 발 빠른 대응으로 신소득 작목 조기정착
- 코로나19 대응 일손부족 농가 일손 돕기
  - 추진내용 :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촌 인력 수급 애로에 대응 긴급 농촌일손돕기 실시
  - 추진결과 : 적기 인공수분으로 고품질 명품 인천 배 생산에 기여

### □ 기대효과

- 지역특화 농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 구축
- 최신 영농기술 보급을 통한 지속 발전 가능한 농산업 기반 조성

# □ 관련사진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절감



신고배 대체 과일 조성 시범



안전농산물 생산단지 육성



비 벡터링 기술 이용



첨단자동화 온실 설치 시범



시설원에 양액재배 시범

# □ 보도자료

**인천농업기술센터, 과채류 에너지 절감 패키지 사업 효과 특목**

김정호 기자 | 승인 2020.05.29 11:50

토마토 농가 난방비는 줄이고 품질은 높이고

한양 원수화상병을 수확중인 시민농업기술센터 주요 시설제공=인천시농업기술센터

(인천=김정호기자)인천시농업기술센터는 인천 토마토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난방비 절감과 토마토 재배환경 개선을 통한 병해충 예방과 품질향상 효과를 특목이 보였다.

**'코로나에 선거까지' 일손 취약.인력 지원 총력**

박재우 기자 | 승인 2020.04.14 07:42

[행거]

요즘 '코로나19에 선거까지' 겹치면서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용봉사자도 거의 없어 일손 지원과 극지방까지 일손돕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인천농업기술센터, 클로렐라농법 보급 확대 추진**

김정호 기자 | 승인 2018.07.05 09:55

'클로렐라'로 농산물 맛과 품질 높여

배양기를 이용한 클로렐라 배양 사진

[매일일보 김정호 기자]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진)는 '클로렐라'를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클로렐라(Chlorella)는 인공적으로 배양한 녹조류(綠藻類)로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해 우주영양 식품으로 연구되어 유명해졌으며, 최근에는 농작물에 살포하면 식물생육 촉진과 저장성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농업기술센터, 전적 활용 친환경방제 시범사업 실시**

박재우 기자 | 승인 2019.10.18 13:32

[국민TV 권민숙 기자] 인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성)는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근경파리(근)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친환경 방제기술을 보급하는 화훼근경파리 친환경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권민숙 기자] 인천시농업기술센터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분야 시범사업 점검**

김정호 기자 | 승인 2019.10.18 13:32

[서진 기자] 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이상민 인천기자]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2019년 농촌진흥분야 시범사업 점검을 끝마쳤다고 밝혔다.

**인천시농업기술센터, 배, 사과 '과수화상병' 예방 당부**

김정호 기자 | 승인 2019.09.25 09:15:07

[연합시각의소리]인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성)는 올해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배, 사과 재배 농민들에게 화상병 예방 약제를 각가게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배, 사과 등 감나무 식물의 잎, 꽃, 가지, 줄기와 잎 등이 마쳐 떨어 지거나 황갈색 잎은 전체를 갈거나 붉게 마르는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인위적이지 무관한 식물방역이 없고, 한고추로 나무에서 방출되는 균에 의해 과일에 침투하여 발효로 인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하여 방제약기에 등록된 예방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과 배, 사과 과수원의 경우, 꽃피기 전인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까지 '화상병'약을 토착형 약제를 이용해 방제해야 한다. 과수원 전체 또는 지역유형별, 보호도 및 과수원별 수준을 위한 단 된다.

적용방법(배)을 먼저 살포할 경우에는 식물방제에 살포 7일 후의 방제약기가 물 수 있도록 적외열방제 처리시기에 방제기 약제가 방제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인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과수화상병은 개화 전 꽃눈(꽃)에 방제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인공적으로 방제할 때 반드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배의 화상병 약제살포 시기>**

꽃눈 발아 직후 시기

**<사과의 화상병 약제살포 시기>**

눈 발아 시기

# 인천광역시

## 주의·개선 요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내 용

【표 1】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2017~2020.5월 현재)

연 도	2017	2018	2019	2020	비고
채용인원(명)	10	11	13	12	2020년 채용계획인원 - 16명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인천농업기술센터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은 [표 1]과 같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공무원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하 “관리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1.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 수립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관리 규정」 제4조(기간제근로자 등의 관리)에 따르면 사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 목적에 맞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이 필요한 사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9월말까지 예산부서에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상의 근무기간, 근무목적 등에 부합하도록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인천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7~2019년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였다.

「관리 규정」 제10조(채용절차)제1항에 따르면 사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업무의 내용, 채용 조건, 채용자격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 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 규정」 제10조의2(채용결격사유)에서 공무원근로자 채용결격사유를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채용 구비서류와 인사기록)에서 사용부서가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하며, 필요시에 결격사유조회를 한 후에 채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감사대상기간 내 모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시 채용 분야의 업무내용과 상관없이 응시 가능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였고, 2017~2018년도 ☐☐사업(본점 및 분점)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에는 성별을 남자 로만 제한하였으며, 결격사유도 「관리 규정」에서 정한 사유를 따르지 않고 「지방 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공고하는 등 자격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

2018~2020년까지 “▽▽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현황을 보면 매년 1명 모집에 1명만 응시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근무 가능자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음에도 매년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2018년에는 농업관련기관 근무경력자로서 농업 기술상담이 가능한 자가 응시할 수 있었지만, 2019년에는 농업기술센터 근무 경력자로서 농업기술 상담이 가능한자, 2020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직 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농업기술상담이 가능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마다 자격조건을 강화하여 공고한 결과 201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동일한 사람을 채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인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공고문에 거주 지역 자격 요건을 모두 인천 관내거주자로 제한하였으나, “▽▽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한하여 거주지 제한을 하지 않거나 인천·경기 지역으로 제한하여 공고하였고, 합격자의 거주지는 2018~2019년은 경기, 2020년은 인천으로 확인되었다.

## 2.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러나, 인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주민등록 등·초본 등)임에도 해당 응시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응시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 3. 채용서류 접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에 따르면 구직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11조4항에 따라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천농업기술센터 채용 공고문 확인 결과 채용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 접수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였고, 불합격 응시생들의 채용서류 확인 결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징구하고 반환한 1건(2020년도 도시농업교육 기간제근로자)과 반환의 청구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부적정하게 보관 중인 1건(2018년도 ㉠㉠ 기간제근로자)을 제외한 그 밖에 채용서류들은 반환청구서를 징구하지 않고 반환하거나 담당자 임의로 파기하는 등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 4. 채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관리 규정」 제10조(채용절차)제4항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기준(안) 수립(●●과-○○, 2020.○○.○○.)”에 따르면 1차 심사는 서류전형, 2차 심사는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을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은 [표 2]과 같다.

[표 2]을 보면 1차 서류전형을 통하여 업무 관련분야 자격증과 업무 관련 경력

기간에 대하여 각각 최고 20점의 점수를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공고문 확인 결과 업무 관련분야 자격증과 업무 관련분야 경력의 인정범위를 미리 정하여 알리지 않는 등 응시자들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자격증과 경력증명서도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기간제근로자 평가 방법**

평가 항목	합계	업무 관련분야 자격증		업무 관련 경력기간		면접	실기		자 기 소개서
배점	100점	20점		20점		30점	20점		10점
		1종 이상	없음	1년 이상	1년 미만	면접관 평균점수	양호	미흡	제출
		20점	10점	20점	10점	30점	20점	10점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증 : 업무 관련분야 자격증(국가자격증만 인정)</li> <li>* 경력기간 : 관련업무 근무경력만 인정(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시)</li> <li>* 실기가 필요 없는 부서는 면접점수를 50점으로 함.</li> <li>* 실시 심사위원은 실기 분야 담당자로 구성</li> <li>* 평가점수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채용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 : 채용 시 해당부서 별도 기준 수립</li> </ul> </li> <li>* 면접위원 : 3명(소장, 담당과장, 담당팀장)</li> </ul>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020년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시 자격요건은 ① 만 20세 이상인 자로 공고일 현재 인천 관내 거주하는 자, ②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고 그 외 우대사항이나 자격요건(관련분야 자격증 및 경력)은 정하고 있지 않으나, 채용담당자 확인 결과 업무 관련분야 자격증은 농업 관련 자격증 중 “◆◆기사” 및 “◆◆산업기사”를 인정할 수 있고, 경력은 ㉠㉡업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응시자들의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자격증을 제출하였고 인천농업기술센터는 이를 접수하였다.

채용 공고문에 미리 인정되는 자격증과 경력의 범위를 공지하였다면 채용에 필요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응시자들의 수고로움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이 “2020년 □□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자들의 업무 관련 경력을 매우 좁게 인정한 반면, 응시자 중 1명은 업무 관련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업무에 직접 종사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1988. 3.부터 2007. 6.까지 인천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였다는 채용지원서의 경력 기재사항을 인정하여 경력 점수 만점을 부여하였고 응시자 16명 중 최종 채용자(총 2명)로 선정하였다.

또한, 응시자들의 직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인력을 가려낼 수 있는 항목으로 평가항목을 선정하여야 하나, 자기소개서는 응시자들이 제출하기만 하면 내용과 분량에 상관없이 무조건 10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응시자들의 직무 능력 등을 변별하여 평가하는 항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표 2] 기간제근로자 평가방법을 보면 평가점수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채용 선발하고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을 해당부서에서 별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나, “2020년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시 자격요건은 ①만20세 이상인 자로 공고일 현재 인천 관내 거주하는 자, 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공고하였고, 다른 자격 및 우대사항,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채용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최종평가 결과 응시자 2명의 자격증, 경력, 면접, 자기소개서 점수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자 “2020년 ●● 기간제근로자 채용면접 실시결과 및 최종선정 계획 (●●과-○○, 2020.○○.○○.)”에서 농기계 상하차를 위한 지게차 면허 유무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응시자 중 1명이 지게차 면허가 없어 무면허 운전해 해당된다며 탈락시킨 사실이 있다. 우선순위 결정방법도 공고문에 미리 공지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면허도 요구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지원자를 최종 면접 및 실기 평가까지 참여하게 한 것이다.

아울러, 채용 평가항목 중 가장 많은 비중(30~50%)을 차지하는 면접심사의 심사위원을 소장, 담당과장, 담당팀장 등 내부위원으로만 정하고 있고, 면접 당일 부재 시 인천농업기술지원센터 내 행정서열에 의한 대심(代審)으로 실시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인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주의]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시고, 자격요건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민원 서류를 징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기준”의 기간제근로자 평가 방법 중 평가항목 및 배점, 면접위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계약 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8절에 의하면 계약담당자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

정산의 방법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되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정산방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은 2019년 8월 농업기술센터 ◇◇ 전기공사 및 건축·기계공사 입찰공고시에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공고문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 4개 분야 내부공사에서 각 공사에 실제 투입된 인력에 대한 보험료 등의 납부확인 및 정산 절차 없이 해당 금액을 일괄 삭감하고 준공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보험료 등을 정산 후 준공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계약상대방이 정산 자료를 미제출하여 해당 보험료 삭감을 내용으로 한 설계변경 동의서 징구 및 변경계약 체결 후 준공금을 지급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의 보험료 등의 계상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보험료 등 사후 정산은 계약목적물 시공에 직접 투입되는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특히 일용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산서류 미제출을 사유로 해당 계약금액에 대한 일괄삭감 동의서를 징구할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의거 해당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와 준공서류 점검 시 이에 대한 납부내역서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등 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주의] 공사계약 보험료 등 정산업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개 선 요 구

제 목 교육훈련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내 용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제2항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및 단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생 모집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등의 방법으로 모집하고 있으나, 교육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교육, □□ 기초과정, ▲▲교실 등의 교육은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모집인원 및 예비후보자(평균 5명 정도) 인원이 초과되면 더 이상 신청 및 접수가 불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웹 접근성 취약자와 우선모집 대상(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등을 위한 교육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고 교육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또한, 교육별 계획 수립 시 수료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교육출석률로 정하는 경우 70%~90% 이상 등으로 통일된 기준 없이 교육별로 다르게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개선] 교육생 모집 시 웹 접근성 취약자, 우선모집 대상 등을 위한 교육신청 방법 및 선정기준과 교육별 수료기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주 의 요 구

제 목 농업인 단체 보조금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농업지원센터에서는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 핵심주체 육성, 후계농업인 지도자 육성, 농업인 조직 육성 등을 위해 농업인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제6조제2항 별표12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2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전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2조6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그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의 증빙서류와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단체에서 신청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매년 동일한 내용과 금액으로 예산비목과 구체적인 산출내역도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였음에도 보조금 교부 결정 검토 시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내용과 금액을

그대로 적정으로 판단하여 교부하였으며, 농업인 단체가 사업완료 후 제출한 사업 완료 보고서의 내용이 계획과 일부 다르게 집행된 사실 등이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정산검사를 완료하고 보조금액을 확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 [주의]** ①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농업인 단체 보조금 지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시정·개선 요구

제 목 농업인상담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지방농촌진흥기구)제2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096호 제22조의2(하부조직)제3항제13호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내 영농상담과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기술 보급과 농업 재배 기술 교육 등의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중구(영종, 용유), 계양, 검단 지역에 상담소를 설치·운영 하고 있다.

### 1. 농업인상담소 근무자 배치 부적정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개의 상담소에 농촌지도사 각 1명씩을 근무지정하여 운영 하고 있으나, ☐☐상담소는 2020.00.00. 인사발령 이후 근무자를 지정하지 않고 2020.00.00. 부터 센터 ●●과 직원이 주2회(화, 목) 대체 근무를 하는 등 업무 공백이 발생하였으며,

1인 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0.00.00. ☐☐과 소관 “▲▲ 지원” 보조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를 ☐☐상담소에 배치하여 근무·운영하도록 하는 등 상담소의 근무자 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 2. 농업인상담소 지도일지 및 상담대장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농업인상담소 3개소에서는 근무자가 농촌지도일지와 농업인 민원 및 상담대장 등을 일일 작성·관리하고 있으나, 상담소 3개소가 각각 다른 서식과 방법으로 작성·관리 하고 있다. ▽▽ 상담소는 상담대장만 작성하여 월별 과장전결 처리, □□ 상담소는 상담대장만 작성하여 월별 과장전결 처리하였고 2020.○○.○○. 기간제근로자 근무 배치 이후에는 근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관리담당자가 전결로 일일 결재처리, ◆◆ 상담소는 농촌지도일지만 작성하고 결재처리 없이 관리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시정] 농업인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한 근무자를 배치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농업인상담소 운영 및 상담 내용 등을 농업기술센터와 공유하여 유기적인 농업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소 3개소의 지도일지 및 상담대장 등의 서식을 통일하고 전자결재 등을 이용한 작성·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개 선 · 권 고 요 구

제 목 농기계 임대수입금 세입처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하면 농가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품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당 지원대상 농기계는 5기종[대형농기계(트랙터, 콤파인) : 10만원 이내, 소형 농기계(경운기, 관리기 및 기타) : 5만원 이내]으로 하며 연간 3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농기계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징수할 부품대금에서 감면하고,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농기계 수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농기계수리점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부품대금의 지원범위에서 농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임대기준)에서 농기계는 신청 순서에 따라 1농가당 기종별로 1대, 임대기간은 3일(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이내로 한정하고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며, 제9조(임대료)에서 시장은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별표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 범위에서 정하여 매년 시보 등에 게재하고 농기계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하며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비용 및 그 밖의 임대사용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회계법」 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및 제21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며,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수납금의 납입)에서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출납원의 수납) 제2항에서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5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제47조제2항에서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한편,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부과·징수를 전산 관리하고 있으며 세외수입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금융기관, 지로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식 제공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 (<https://etax.incheon.go.kr>)을 이용하여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고도 납부자의 휴대폰으로 부과내역, 가상계좌 납부안내 문자전송 등 납세자 편의증대와 더불어 실시간 수납 확인 등 세외수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농기계 임대료, 농기계 수리 초과 부품대금)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세외수입고지서를 발급하고 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농가 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 내 본점과 중구농협 경제사업장에 분점을 두고 농기계 48기종 68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농기계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징수할 부품대금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품대금을 감면하고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부품대금은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농기계 임대는 신청 및 승인을 거쳐 출고 전까지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농기계 수리 부품대금 초과금 산정업무와 농기계 임대료 징수업무는 ㉠과에서, 농기계수리 부품대금 초과금과 농기계 임대료에 대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부과내역 입력 및 수납관리 등 세입처리는 ㉡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시 종합감사결과 “농기계 대여수입 세입 처리에 관한 사항” 지적사항에 대하여 ‘농기계 대여수입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세입처리’ 하도록 요구하였는바, ㉠과는 계좌로 입금된 임대료를 월 3회 이상 징수결정 내역을 보고하고, ㉡과에서는 징수결정 내역보고를 근거로 금고에 5일 이내 납입하여 수입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7년 종합감사 결과 처분 조치 농기계 대여 수입 세입처리에 관한 사항”(㉡과-○○, 2017.○○.○○.)에 대하여 내부결재를 받았다.

이후 ㉠과에서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농기계 임대 신청자의 납부 편의를 사유로 농기계 임대료 전액을 공공계좌(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입금 받아 징수결정내역을 보고, ㉡과에서는 징수결정내역 보고를 근거로 농기계 임대료 수입 1,782건 총 51,832천원을 은행에 납입하여 세입처리하였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료 수입 세입처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당초 이행계획과는 달리 매월 3회(10일 단위) 징수결정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징수 결정내역 보고 후 5일을 경과하여 세입 처리한 경우가 23회 924건(전체 건수의 52%), 23,876천원(전체세입의 46%)에 해당하며, 특히 2018년 3월분(3. 1.~ 3. 10.입금분, 13건 318천원) 및 2019년 2월분(2. 16 ~ 2. 28. 입금분, 23건 629천원)은 징수결정 내역 보고 후 각각 282일, 299일이 경과한 2018. 12. 21.과 2019. 12. 30.에 세입 처리 하였고, 6개월 15일분(4월 16일~ 10월 31일)은 2019. 10. 31.에서야 징수결정 내역을 보고하는 등 임대료 징수와 세입처리를 2개부서로 나누어 관리함에 따라 징수보고 및 세입처리를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농가의 납부편의를 사유로 임대료 입금용 공공계좌(세입세출외현금계좌)만을 이용한 납부방식을 운영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과납 또는 착오입금은 2018년 이후 현재까지 39건 1,160천원이 발생하여 회계기간 내 전액 반환처리하였는바, 과오납금의 경우 발생사실이 확인된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농기계 사용신청자와 입금자 불일치, 입금자 불명 및 반환계좌 확인 등의 사유로 입금일로부터 30일 이상 최장 317일 만에 반환한 건이 27명 620천원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농기계 사용승인 시 임대료의 공공계좌 입금방식이 아닌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임대료수입을 관리하는 경우 임대사업 이외에 발생하지 않았을 과오납 반환 업무가 추가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개선] ①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부서(●●과)와 세입처리부서(□□과)로 이원화된 세외수입 관리체계를 사업추진부서(●●과)로 일원화 하고,

② 농기계 임대료의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및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한 부과·징수 추진, 임대료 수납계좌(세입세출외현금계좌) 폐지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임대료 수납과 관련하여 카드수납이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리더기 도입에 따른 유지비용과 편의성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세외수입총괄부서와 협의하여 도입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주의·개선 요구

제 목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0조(자치법규 정비)에 따르면 ‘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2014. 3. 10.자로 제정하여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점과 중구농협 경제사업장에 분점을 두고 농기계 48기종 68대를 투입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 및 임대료의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대농업기계 100만 원 미만부터 5천만 원 이상까지의 구입가격별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1일 임대료기준'을 정하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정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2019. 6. 25.자로 개정·시행하였다.

조례 제16조에 의하면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를 두고 농기계 임대, 임대료 부과·징수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임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제9조제1항에 '시장은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별표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범위에서 정하여 매년 시보 등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위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2019. 6. 25.자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9호로 개정으로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이 변경되어 조례 제9조와 관련한 별표에 반영하여 개정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시 비상대책과에서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각종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 또는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 및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병역명문가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요청(▣▣과-○○, 2019.○○.○○. / ㉠㉠과-○○, 2019.○○.○○.)하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호(2019.○○.○○.)로 '관련조례 2019년 6월중 개정안 상정'으로 농축산유통과에 회신하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다.

조례 제16조에서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제9조에서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별표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범위에서 정하고 매년 시보 등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8. 2. 2.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시

2018-52호(2018. 3. 1.)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임대료 고시’ 이후 2019. 3. 27.에 2019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구입장비(농업용드론) 모델 및 임대료 결정안’을 심의·의결하고도 농기계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https://www.amrb.kr/incheon/>) 홈페이지에 임대기종 및 사용료를 게시하여 안내하고 있을 뿐 조례 제9조에서 정한 농기계 임대료 고시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조례 제9조(임대료)에는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부과기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매년 초 수립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추진계획”의 운영절차에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출고 전까지 납부“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농기계 사용 신청서, 농기계 사용 신청 취소원, 임대료 감면 신청서, 농기계 장비 관리대장, 농기계사용신청대장과 같이 임대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서식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농기계 임대사업 전산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주의]**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업무연찬으로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임대농기계 임대료 심의·의결을 받은 후 반드시 시보 등에 ‘농기계임대료 고시’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상위법령 개정사항, 감면대상자 추가, 임대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및 임대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서식 등을 검토하여 농축산유통과와 협의하여 현행 규정에 맞게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